

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6. 9. 9.
행정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6. 8. 21. 차해영 의원 외 12인

나. 회부일자: 2026. 8. 24.

다. 상정일자: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(2026. 9. 9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차해영 의원】

가. 제안이유

-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위원회에 센터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위원으로 추가하여 실제 입주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, 센터의 운영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내실화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추가(안 제7조)

다. 참고사항

-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5조
- 입법예고 : 2026. 8. 24. ~ 8. 28. (제출된 의견 없음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① 조례의 개정 취지

- 본 조례안은 차해영의원 외 12인이 공동발의 하여 행정경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위원회에 센터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위원으로 추가하여 실제 입주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, 센터의 운영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내실화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② 주요 개정내용

- 안 제7조제4항제3호 신설하는 내용으로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도록 규정함.
- 기존 제7조제4항제3호를 제4호로 이동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함.

제7조(운영위원회 구성 등) ① 구청장은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출판문화진흥 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구 소속 관계 공무원 1명
2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1명
3.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입주 기간 만료 대표자 1명
4.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③ 조례 개정 필요성 검토

-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임.
 - 운영위원회 심의·의결 기능으로 ①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출판문화진흥센터 명칭에 관한 사항 ③ 입주 승인, 입주 기간 연장, 입주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관한 사항 ④ 수탁자의 사업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현행 조례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에는 관계 공무원, 전문가 등으로 ‘센터에 입주한 경험이 있는 자’가 포함되지 않아 센터 운영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.
 - 운영위원회 구성은 업무 관련 국장, 구 소속 관계 공무원 1명,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1명,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총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.
-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의 실효성 및 내실화를 위해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무적 경험과 현실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‘센터 입주한 경험, 입주 기간을 만료한 자’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필요.
 - 입주 기간을 만료한 자는 센터의 혜택을 경험한 바, 실제 센터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등 현실적인 운영 개선 및 지속적인 참여로 센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.

④ 종합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위원회가 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 등에 주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는 기구로, 관계 공무원, 전문가 등으로만 운영위원회 위원이 구성되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현안에 대해 파악 및 반영 하는 데 한계가 있는 사항을 고려해 ‘센터 입주한 경험, 입주계약 기간 만료자’를 추가하여 센터의 현실적

인 운영 개선 및 발전 방향 제시로 내실화 및 실효성 제고 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

[별표 1] 관계 법령

「문화예술진흥법」

[시행 2025. 11. 11.] [법률 제21091호, 2025. 11. 11., 일부개정]

제5조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8. 8.>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